



러시아 선도특구법 2015년 3월 30일 발효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투자 촉진 목적의 경제특별법

법무법인 뱌벨라예프 그룹은 2015. 3. 30.부로 발효된 러시아 사회경제개발선도특구에 관한 연방법(이하 “선도특구법”)이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에 있어 검토해야 할 중요한 법률로 판단하고 이를 알려 드리오니 러시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도특구법은 러시아 지방, 특히 극동지역의 전략거점을 특구로 70년간 지정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투자자에 각종 특혜와 행정 편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며 이들의 경제활동을 도와 러시아의 선진 산업 기반을 조성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선도특구 지정 현황

2015년 4월 30일 현재, 선도특구로 확정된 지역은 6개 연방주체에 9개 지역입니다.

- 하바롭스크주 - '하바롭스크 선도특구', '콤소몰스크 선도특구'
- 연해주 - '나제진스까야 선도특구', '미하일롭스키이 선도특구'
- 아무르주 - '쁘레드모스토파야 선도특구', '벨로고르스크 선도특구'
- 캄차트크주 - '캄차트카 선도특구'
- 추코트크주 - '베린곱스키 선도특구'
- 사하공화국 - '칸갈아시 선도특구'

선도특구법의 주요 내용

▶ 선도특구 감독위원회

선도특구 감독위원회는 10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연방정부기관, 연방주체행정부, 기초자치단체, 선도특구 관리공사, 지역노동조합, 지역경영자협회, 선도특구거주자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그 권한은 연방정부가 승인한 감독위원회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선도특구 관리공사(이하 “특구공사”)

선도특구 관리공사는 연방정부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 혹은 그 회사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서 선도특구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 선도특구 거주자(이하 “거주자”)

거주자는 회사 혹은 개인사업자 가운데 특구공사로부터 거주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거주자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거주자는 선도특구 이외의 지역에 그의 지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다른 경제특구 등의 거주자를 겸할 수 없다.

▶ 거주자 지위 취득 절차

- 거주자 승인 신청: 지정양식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특구공사에 접수
- 승인 심사: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거주자 지위 승인 여부 결정
- 투자약정의 체결: 거주자 승인 후 신청인과 특구공사 간에 투자약정 체결
- 거주자 등록: 투자약정의 체결 후 3일 이내에 거주자 명부에 등록
- 유관기관 신고: 거주자 등록 후 3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사회기금, 세관에 거주자 신고

▶ 거주자의 특혜

거주자는 선도특구법과 투자약정에 따른 조세(법인세, 재산세, 토지세 등), 사회기금, 세관, 외국인 근로자 사용, 행정인허가 및 행정감독, 토지의 임차 혹은 매매, 유틸리티 사용에 있어 특별 절차와 방식에 따라 특구 이외의 지역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혜가 제공됩니다.

또한, 선도특구에는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 의사 자격자에 대해서 러시아 의료 면허 및 의사 자격을 별도 취득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베벨라예프 그룹 한국팀(Korean Desk)의 Comment

선도특구제도는 기존의 경제특구제도보다 한 단계 발전된 투자 유인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법안이 마련될 단계에 있어서는 국가 전략상 극동지역에 국한된 지역개발 특별법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타 연방주체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요구함에 따라 선도특구법 발효 후 최초 3년 기한은 극동지역에 한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전 러시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도특구제도는 이전에 없었던 파격적인 특혜와 거주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투자 시 투자지를 선택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또한, 선도특구에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 의료인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제조업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료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 볼 만하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사용과 관련한 이민행정과 근로감독이 간편하므로 다수의 생산인력을 필요로 하거나 북한근로자를 생산인력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교적 용이할 것입니다.

저희 베벨라예프 그룹은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협력하여 한국기업의 선도특구 입주를 위한 법률자문이나 대관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설립, 거주자 지위를 얻기 위한 신청 문서의 구비, 특구공사와 투자계약 자문, 인허가의 취득, 외국근로자와 관련된 법률 문제 등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법률 및 행정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epeliaev Group 소개 및 Contact details

법무법인 “베벨라예프 그룹”은 국제평가기관 CHAMBERS GLOBAL, CHAMBERS EUROPE, LEGAL 500, WTR, IFLR 등 으로부터 매년 러시아 최고 로펌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모스크바(본사),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등 러시아 5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약 20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최대 법무법인입니다. 동시에 대표변호사 직속으로 한국팀 (Korean Desk)을 설치하여 한국기업들을 위해 각종 국제계약, 러시아 투자, 국제분쟁의 해결 등을 위한 최상의 러시아 법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팀(Korean Desk)은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과 현지 사업을 돕고자 정기적으로 최신 러시아 법률과 판례 동향에 관한 국문 Legal alert를 발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Legal alert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희가 발행하는 Legal alert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정노중 한국팀장/파트너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details



정 노 중

한국팀장/파트너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모스크바시 변호사회 소속(2006-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2012-2014)
 모스크바 Bar Exam 외국인 최초 합격(2006)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90학번)

T.: +7 495 967 0007(Ext.387)
 +82 10 6411 5737 (Seoul)
 E.: nc.cheong@pgplaw.ru

본 Legal alert는 한국기업에 필요한 러시아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저희 법무법인의 공식적인 법률의견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